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1830 자동차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11. 22.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8. 3. 6.까지 B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표의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지방세법 제125조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여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점(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970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 중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에 의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4년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 [redacted]구 C, [redacted]동 [redacted]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4. 6. 12. 및 2014. 12. 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로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그 납세고지서가 피고에게 반송된 바는 없는 점(을 제1호증의 1, 2, 제5,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4. 6. 12.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원고가 소유하는 별개의 차량인 D 차량에 관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함께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위 D 차량에 관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점(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 12. 및 2014. 12. 9. 원고의 위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가산금 6,81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040원,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가산금 6,29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1,880원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9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다(피고는 2014. 6. 9. 및 2014. 12. 7.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의 징수처분을 한 바도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차량을 전혀 운행하지 못한 만큼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6. 12. 및 2014. 12. 9.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8. 13.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의 체납고지서가 2014. 8. 20.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아파트 경비원인 E에게 등기우편으로 배달된 점(을 제2호증의 기재), 원고는 2017. 6. 2.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체납내역이 기재된 체납정보조회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체납정보조회서는 2015. 2. 4. 출력된 것인 점(갑 제2호증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2. 인천광역시장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인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나.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가산금 6,81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2,040원, 20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년 제2기분 자동차세 가산금 6,290원, 지방교육세 가산금 1,88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 중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의 소 중 자동차세 가산금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고지일	과세기간	자동차세	자동차세 가산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가산금
2014. 6. 9.	2014년 제1기분	227,300	6,810	68,190	2,040
2014. 12. 7.	2014년 제2기분	209,820	6,290	62,940	1,88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21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